

조선후기 연례송사(年例送使) 정지 사례를 통해 본 대일교섭*

심민정**

1. 머리말
2. 연례송사 정지와 견대제 교섭
3. 연례송사 정지 사례
 - 1) 왜관 수리 및 개축
 - 2) 통신사행 파견
 - 3) 규례 외 기타 사례
4.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 후기 왜관이 초량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례송사는 ‘왜관 수리 및 개축’, ‘통신사행 파견’, ‘규례 외 기타 사유’의 3가지 사례일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왜관 수리와 관련해서는 수리공사 전후 언제부터 연례송사를 정지할 것인가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왜관 수리하는 당해의 1년분 연례송사 전체를 정지하던 것에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왜관 수리에 들어간 직후 연례송사부터 정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로 통신사행과 관련해서는 서계 접수와 회답서계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다. 1711년 통신사행 때 이 논의가 가장 격화되었는데, 대마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2022S1A5B5A16055676)

** 부경대학교 해양인문학연구소 인문학술연구교수(sleeping100@hanmail.net)

도주가 아닌 봉행왜가 서계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에 대해 허용할 수 없었던 조선 측의 강한 대응과 회답서계를 주지 않으면 연례송사 정지를 철회하겠다는 대마도 측의 강한 대응이 충돌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양측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쳐 통신사행이 끝난 후 이듬해 세전1선 편에 보내는 회답서계에 감사의 뜻을 포함하는 것으로 절차가 정례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잦은 별차왜의 도래, 기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연례송사 접대에 부담이 가중된 특별한 상황에서 송사 정지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특히 1753년 송사의 경우는 이런 특수한 사정으로 정지될 때 선례로 자리매김했고, 1779년 사례는 송사의 정지 여부, 정지의 범위, 도서 문제 등 다양한 논의거리를 만들어냈지만 결국 양측의 소통으로 큰 충돌 없이 합의에 도달하였다.

* 주요어: 연례송사, 연례송사 정지, 접대제, 왜관 수리, 통신사

1. 머리말

조선후기 한일관계는 임진전쟁이라는 '전쟁'이 단초가 되면서 '평화'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해졌다. 때문에 양국 교린관계는 변화를 거듭하였다. 거듭된 조일 양국 관계 변화에 대해 지금껏 통신사 파견을 기준으로 '교린관계 회복(교섭)기(1599~1635) - 교린체제 확립·안정기(1636~1810) - 교린체제 쇠퇴·변질기(1811년 이후)'로 구분되는 것¹⁾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1682년

1) 三宅英利는 1607-1635년까지의 통신사행 시기를 '국교재개기', 1636-1682년 통신사행기를 '국교안정 전기', 1711년 사행을 '개변기', 1719-1763년 통신사행기를 '국교안정 후기', 1811년 사행을 '쇠퇴기'로 구분했다.(三宅英利 지, 손승철 역, 『근세 한일관계 연구』, 이론과 실천, 1991). 한태문은 1607-1624년 통신사행기를 '교린체제 모색기', 1636-1655년 통신사행을 '교린체제 확립기', 1682-1763년 통신사행을 '교린체제 안정기', 1811년 사행을 '교린체제 외해기'로 구분하였다(한태문, 『朝鮮後期 通信使 使行文學의 特徵과 文學史的 意義』, 『동양한문학연구』 10, 동양한문학회, 1996). 하우봉은 임진전쟁 후-1635년을 '교린관계 회복교섭기', 1636-1811년을 '교린체제의 확립 및 안정기', 1812-1867년을 '쇠퇴기'로 설정하

임술 통신사행 이후부터 18세기에 이르는 기간은 대체로 ‘교린제제 안정기’로 정립되어 왔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이르는 기간은 일본과의 교린관계가 다변화한 시기이다. 1678년 초량으로 왜관이 이전하였고, 裁判差倭²⁾·大差倭³⁾가 공식적으로 새로이 정립되었으며, 兕名送使에 대한 접대 여부가 다시 논의의 대상⁴⁾이 되기도 했다. 울릉도쟁계 같은 외교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통신사 접대 및 일본사신 접대, 표류민 송환 등과 관련한 여러 규정도 변화를

였다(하우봉, 「조선 후기 한일관계에 대한 재검토-사절 왕래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제26회 동양학술회의 강연초』,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7). 이들 연구자의 공통점은 17세기 말~18세기 후반까지의 한일관계를 교린제제(관계) 안정기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 2) 조선시대 대마도와 조선 사이에 외교적 교섭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파견되는 裁判은 1680년 9월 『接倭式例』에서 그 명칭이 처음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는 1681년 7월 『변례집요』에 기록된 장계에서 처음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1682년 임술통신사행에서 差倭 兼帶制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裁判差倭’에게 다양한 외교교섭 업무를 부여하기 전까지 通信使와 問慰行의 호환과 송환, 公作米 연환을 논의하기 위한 업무가 주요 임무였다. 초량으로 왜관이 이전한 후에는 재판에게 외교교섭 업무를 주임무로 부여한 幹事裁判이 정립되었고, 이는 초량왜관 내에 두모포왜관에는 없던 裁判家가 새로 생긴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심민정, 「1682년 임술통신사행의 임술약조 강경과 조일 교린관계의 재편」, 『한일관계사연구』 73, 한일관계사학회, 2021, 17~22쪽.) 한편 재판차왜에 대한 연구로는, ‘이혜진, 「17세기 후반 조일외교에서의 裁判差倭 성립과 조선의 외교적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8, 한일관계사학회, 1998; 윤유숙, 「조선 후기 쓰시마 간사재판(幹事裁判)의 활동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2, 한일관계사학회, 2018; 윤유숙, 「18세기 후반 쓰시마 간사재판(幹事裁判)의 교섭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6, 한일관계사학회, 2019’ 등이 있다. 최근에는 18세기 裁判役에 대해, ‘이형주, 「18세기 쓰시마 번의 재판(裁判) 파견에 관해: 1736년 오일잡물 교섭을 사례로」, 『일본공간』 32,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2; 이형주, 「18세기 조일 외교 속 쓰시마 번 裁判役의 역할」, 『일본역사연구』 61, 일본사학회, 2023’ 등 이형주의 연구가 활발하다.
- 3) 차왜는 예조참의 앞으로의 서계를 지참하는 小差倭와 예조참판 앞으로의 서계를 지참하는 大差倭로 구분된다. 일본국왕사격에 해당하는 대차왜는 일본 측에서는 參判使라고 부르며 그 역할을 구분하였는데, 조선 측에서는 향접위관이나 경접위관의 접대로 차왜를 구분하여 접대를 하기는 했지만 명칭을 구분하지는 않았다. 대차왜라는 공식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1682년 임술 통신사행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통신사청래대차왜’의 경우 1681년부터 대차왜접대례를 적용(『변례집요』 권1, 「별차왜」 무술(1718) 1월.)하고 있다. (심민정, 「조선 후기 통신사행 관련 차왜 접대」, 『조선통신사연구』 24, 조선통신사학회, 2017, 14~16쪽; 심민정, 앞의 글, 2021, 31쪽.)
- 4) 조선 후기 兕名送使의 圖書制 운용에 대해서는 ‘유채연, 「조선 후기 圖書制의 운영과 조일 관계」,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이 참조된다.

겪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교린체제 안정기’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한편 이러한 외교적 분쟁들이 큰 충돌 없이 해결되고 안정기로 인식되었다는 점은 조일 양국이 평화적 교린관계를 지향하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조·일 교린관계는 ‘안정기’라기 보다는 ‘안정을 위해 노력한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17세기 말~18세기 한일 양국이 평화적 교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노력으로 실제 18세기는 안정기로 불릴 만큼 큰 충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논자는 앞선 연구에서 평화적 교린관계를 위한 교섭의 시발점이 되었던 ‘연례송사 兼帶制 시행 과정과 의미’를 확인⁵⁾하고, 17세기 말 양국 사이에 약정된 ‘壬戌約條’의 교섭과정과 양상을 확인⁶⁾하였다. 또한 17세기 말 사라진 ‘漂倭入送回謝差倭’의 소멸 과정⁷⁾을 통해 양국의 평화적 교린관계를 위한 교섭과 노력을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연례송사 정지 사례를 통해 본 대일교섭’이라는 주제로 양국의 외교적 소통 과정과 내용 및 협의에 도달하기까지 양국의 노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시기는 검대제 시행 이후 공식적으로 연례송사 정지사례가 나타나 규제화되는 시기로, 1678년 초량왜관 이건 전후인 17세기 말부터 18세기 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연례송사는 ‘왜관 수리 및 개축’, ‘통신사행 파견’, ‘규례 외 기타 사유’의 3가지 사례일 경우에 한하여 정지되었다. 이들 각 사례를 살펴 양국의 교섭 실태를 확인해본다. 한편 검대제 시행은 여러 범주의 연례송사가 정비되는 배경이 되었으므로 시행 과정에 대해 우선 개략적으로 정리한 후 연례송사의 정지가 규제화된 시점 및 정지를 위한 양국의 협상 절차, 실제 정지된 사례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연례송사의 외교적 특성 및

5) 심민정 「조선후기 연례송사 검대제 시행과 외교적 의미」, 『인문사회과학연구』 24(3),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129~155쪽.

6) 심민정, 2021, 앞의 글, 3~42쪽.

7) 심민정, 「조선후기 표왜입송제도의 변화와 표왜입송회사차왜의 소멸 과정」, 『2023년도 한일관계사학회 학술대회 '바다에서 바라본 조선' 발표자료집』, 한일관계사학회, 2023, 49~63쪽.

양국의 평화적 외교 문제 해결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 생각된다. 동시에 17세기 후반 이후 외교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도 재평가가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례송사 정지와 겸대제 교섭

임진전쟁 이후 일본과의 국교가 재개되면서 양국 사이에 사신들의 왕래도 다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으로 파견된 연례송사⁸⁾란, 1609년 기유약조에 의해 외교·통상을 목적으로 하여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도항하던 일본 사절을 의미한다. 기유약조 약정 직후 연례송사의 범주에는 對馬島主特送使 및 歲遣船 20척, 受圖書船 5척, 受職人船 5척⁹⁾이 포함되었다.¹⁰⁾ 이후 1637년부터 본격적으로 겸대제가 시행되면서 대마도주 세견선 5척(세견1선, 세견2선, 세견3선, 세견4선, 1특송사선)과 수도서선(부특송선, 만송원송사, 이정암송사, 평언삼송사)¹¹⁾ 4척이 연례9송사로¹²⁾, 그리고 1702년 평의진송사가 혁파된 이후에는 대마도주 세견선 5척과 수도서선 3척(부특송선, 만송원, 이정암송사)을 포함하는 연례8송사체제로 마무리되었다.

8) 조선시대 전·후기를 통틀어 연례송사는 일본 측에서 해마다 파견하던 使船으로 歲遣船이라고도 한다. 조선 전기의 세견선은 日本國王送使, 日本諸酋送使, 馬島送使를 지칭하였으나 임진전쟁 이후 1609년 기유약조가 약정되었을 때에는 이들을 모두 혁파하고 새로이 세견선을 약정하여 '연례송사'라고 지칭하였다.『春官志』 권3, 연례송사.)

9) 『증정교린지』 권1, 年例送使 조에는 中絶五船이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중절오선은 受職人이지만 접대는 허락되지 않았고, 진상과 공무역은 허락되었다. 접대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례화된 연례송사선으로 보기는 힘들다.

10) 『春官志』 권3, 연례송사; 심민정, 「두모포왜관 시기와 초량왜관 시기 연례송사 접대 비교 연구 -『接倭式例』(1659)와 『嶺南接倭式例改謄錄』(1732)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65, 한일관계사학회, 2019, 86~87쪽.

11) 『증정교린지』 권1, 接待對馬島人新定事例, 受圖書人.

12) 본 연구자는 2019년 게재된 「두모포왜관 시기와 초량왜관 시기 연례송사 접대 비교 연구 -『接倭式例』(1659)와 『嶺南接倭式例改謄錄』(1732)을 중심으로-」에서 시기별 연례송사 범주가 변화하는 과정을 서술하면서(90~96쪽) <표3>에서 1642년 평의진 도서발급 이후에 연례10송사가 파견된 것으로 정리하였는데, 평의진과 평언삼송사는 모두 도서가 발급되었지만 겸대하였으므로 본고를 빌어 '연례9송사'로 정정한다.

한편 『春官志』의 기록¹³⁾을 근거로 하여 연례송사와 세견선을 동일한 용어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기유약조 약정 이후에는 세견제1선, 세견제2선처럼 별도로 ‘세견선’이라고 지칭하는 말이 존재하고, 이 세견선에 수도서선을 포함하여 연례송사라고 통칭하고 있으므로 ‘세견선’과 ‘연례송사’라는 용어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¹⁴⁾ 이에 본고에서는 연례송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연례송사의 왕래 규정 및 접대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이들은 상황에 따라 정지와 재개를 거듭하였다. 대표적으로 1626년 調興送使가 정지되었다가 재차 파견된 사례가 있다. 조흥송사는 1611년¹⁵⁾에서 1612년¹⁶⁾ 사이 受職倭인 柳川景直이 조선에 圖書를 요청하여 왕래하게 된 使船으로, 柳川景直 사후 그의 아들인 柳川調興이 승계하였다. 이후 1632년 대마도주와의 사이에 소송[柳川一件 : 國書改作事件]이 진행된 결과 1635년에 도서를 반납하였다가, 1639년 대마도주 명의를 도서를 지참하고 부특송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왕래¹⁷⁾하였다.

柳川調興은 도서를 승계한 이후 한동안 건너오지 않다가 1626년 4월 갑자기 조선에 와서 정지된 7년 동안의 미수 公木을 요구하였다. 조선 측은 조흥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다가 조선과 협의를 거쳐 송사를 정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폐단을 우려하여 1624년 이후 3년 치의 公質價木만 해아려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¹⁸⁾ 이에 대해 유전조흥은 이제껏 송사선이 來朝하지 못하고 정지되었던 것은 조선과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업무를 주선했기 때문인데 3년 치의 몫만 인정한 것¹⁹⁾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

13) 『春官志』 권3, 연례송사.

14) 다만 『春官志』에서 언급한 ‘歲遣船’은 ‘해마다 파견되는 使送船’을 축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5) 『증정교린지』 권1, 年例送使.

16) 『변례집요』 권2, 도서·상직, 신해년(1611) 12월; 임자년(1612) 1월. 柳川景直이 圖書를 발급받은 시기에 대해 『증정교린지』에서는 1611년, 『변례집요』에서는 1612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변례집요』의 기사에 의하면 1611년 말부터 1612년 초까지 도서 발급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 끝에 1612년 1월에 가서야 도서발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구체적이라 1612년에 도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17) 『증정교린지』 권1, 年例送使; 『변례집요』 권2, 도서·상직; 유채연, 2021, 앞의 박사학위 논문, 16~35쪽; 심민정, 2023, 앞의 논문, 143~147쪽.

18) 『변례집요』 권8, 공무역, 병인년(1626) 6월; 『변례집요』 권2, 송사, 병인년(1626) 11월.

였다. 이 사례는 물론 조흥이 정식으로 서계 등을 지참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송사의 정지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공식적인 연례송사 정지 사례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조흥의 사례처럼 당시 여러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송사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1>은 앞의 사건을 비롯하여 연례송사 정지가 규례화된 것을 계기로 겸대제 교섭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연례송사 정지와 겸대제 교섭 과정

| 1626년 조흥송사 정지 | 1631~1636년 柳川一件 | 1635~1636년 송사 兼帶 교섭 | 1637년 연례송사 兼帶 교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26. 4. 도래한 조흥송사가 정지되었던 7년치 공무역 미수 잡물 등을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34. 12. 2.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선에 통교선 도항을 중지한다는 서한을 보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35. 11. 平智友를 파견하여 송사선의 재개를 알리고, 조흥, 이정암, 유방원 도서와 의관 반납 1636. 4. 藤智繩이 渡海譯官이었던 洪喜男에게 1635년 묵의 세견선을 한 번에 겸대한다는 뜻을 알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37. 1. 통신사가 돌아오기 전까지 1637년 송사선 정지. 1637. 4. 강우성, 홍희남, 이장생이 왜관을 왕래하며 겸대논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에서는 1624년 이후 3년치 공무역 가만 인정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35~1636년의 2년 치 연례송사 정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36. 6. 1636년 묵의 세견선 겸대.(藤智繩에게 전달) 특송선 1척을 1使. 나오지 않은 세견선 14척을 1使. 1636. 10. 藤智繩이 대마도주의 수표를 가지고 와 겸대 허가. 아직 나오지 않은 3특송·만송원·평언삼·나머지 세견선은 2특송이 겸대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37. 5. 平成春이 도주의 뜻으로 연례송사 겸대를 허락한다는 뜻을 알림. 1637. 5. 연례송사 겸대제 시행. 특송 2,3선, 평언삼, 세견선 13척은 정관 없이 서계만 지참. |

※ 『변례집요』, 『柳川調興公事記錄』, 『歲船定奪謄錄』를 참조하여 작성함.

※ 심민정, 「조선 후기 통신사행으로 인한 연례송사 정지와 제 문제」, 『조선통신사연구』 37, 2024, 7~8쪽, <표 1> 재인용.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격적으로 연례송사 정지가 정례화되는 시초를 마련한 것은 대마도주 宗氏와 家臣인 柳川氏 사이에 발생한 소송(柳川

19) 『변례집요』 권2, 송사, 병인년(1626) 11월.

一件：國書改作事件²⁰⁾ 때문이었다. 대마도측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선에 보내던 송사선을 정지한다고 통보하고 2년 간 정지하였다. 이런 조치는 통보 없이 송사선을 정지하였던 조흥송사선의 사례와는 달랐다. 이후 양국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연례송사 정지를 요청하거나 통지하는 방식이 정례화되기 시작하였다. 『증정교린지』에서도 연례송사 정지의 시초를 이 소송에서 찾고 있다.

인조 14년 병자(1636)에 대마도주 平義成이 그 부관 平調興과 서로 다툼이 생겨 을해(1635, 인조13)·병자(1636, 인조14) 두 해의 歲船이 모두 오지 않았다. 만약 일시에 모두 온다면 우리나라 物力이 지탱할 수 없으므로 問慰堂上 洪喜男이 대마도주를 타일러서 한 번 올 때에 견대하게 하여 비용을 줄였다. 이후로는 매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例로 삼았다.²¹⁾

연례송사 정지의 시초가 된 사건인 이 소송을 일본에서는 야나가와 잇켄[柳川一件]이라고 한다. 유전조흥이 한동안 내조하지 않다가 갑자기 조선에 송사선을 파견하였던 1626년, 대마도주 宗義成에게 히젠[肥前] 지방의 토지

-
- 20) 柳川一件에 대한 일본측 연구로는, '田代和生『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田代和生, 『書き替えられた國書』, 中央公論社, 1983; 三井大作, 「徳川幕府初代における朝鮮との修好貿易」『史學雜誌』10-2, 1902; 三宅英利『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1986.;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1988, 200쪽.'이 있다. 국내 연구로는, '柳在春, 「임란후 한일국교재개와 국서개작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986;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교린관계의 허와 실』, 경인문화사, 2006, 136~172쪽.'가 있는데 이들 연구의 경우 사건의 경위와 과정보다는 국서개작의 내용에 집중하여 살피고 있다. 柳川一件의 전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민덕기,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 경인문화사, 2007, 257~280쪽.'에서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또한 '김상준·윤유숙 역, 『근세한일관계 사료집 -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柳川調興公事記錄)』, 동북아역사재단, 2015'에서는 소송 자료들을 번역하여 소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4년 6월 발간된 池内敏의 연구서, 『徳川幕府朝鮮外交史研究序説』에서 야나가와 잇켄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수록되었다. 하지만 저서의 발간 기간이 본 연구 투고 기간과 겹쳐 모든 내용을 다 섭렵하지 못하여 연구동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 21) 『증정교린지』 권1, 年例送使停止. "仁祖十四年丙子, 因島主平義成與其副官平調興相構, 乙亥丙子兩年, 歲船並不出來, 若一時偕到, 則我國物力無路支吾, 故問慰堂上洪喜男諭島主, 令一起兼來省費, 自後每值有事, 則必援此爲例."

2천석에 대해 새로 소군의 朱印狀을 발급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가 거절당하자 막부에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 결과 조흥의 조부 몫인 1천 석에 대해서만 주인장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조흥은 대마도주와의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1631년 대마도주에게 받았던 천 석의 토지와 세전선 1척의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마도주의 가신임을 포기하고 막부에게 받은 1천 석과 세전선 1척, 流芳院船 1척을 기반으로 막부의 신하가 되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마도주는 ‘不臣’으로, 유천조흥은 ‘橫暴’로 서로에게 소송을 하였다.²²⁾ 이 일은 조선에도 알려졌다.²³⁾ 조선은 자세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1631년 邢彦吉·朴彦璜 일행²⁴⁾과 1632년 漢祥·崔義吉 일행을 문위행으로 파견²⁵⁾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는 국서개작에 대해서는 폭로되기 전이었고, 막부도 소송에 대해 양측에 심문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조선 측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들었다.

2년 간 방치되던 소송²⁶⁾은 1633년 5월 5일에 이르러 대마도주가 老中에게 심문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조흥은 국서개작사건을 폭로하며 모두 도주가 계획하고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폭로로 인해 관련 심리가 1634년 10월 20일부터 진행되었다.²⁷⁾ 심리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심각

22) 민덕기, 앞의 책, 2007, 257~258쪽; 심민정, 앞의 글, 2023, 133쪽.

23) 『東萊府接倭狀啓曆錄可考事目錄抄冊』, 신미(1631) 9월.

24) 『朝鮮通交大紀』에서는 정사 崔義吉, 부사 船역관으로 되어 있다. (『朝鮮通交大紀』 권7 光雲院公[宗義成], 238쪽.) 이상규(이상규, 「仁祖代 전반 問慰行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35, 한일관계사학회, 2010)와 유채연(유채연, 「조선후기 ‘問慰行’ 명칭과 성립과정에 대한 재고」, 『한일관계사연구』 52, 한일관계사학회, 2015) 등은 이 기사를 인용하여 1631년 문위행은 최의길과 船역관으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변례집요』에서는 1631년 도해역관으로 형언길과 박언항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변례집요』 권6, 書契路引, 辛未(1631) 조에는 ‘대마도주와 아나가와 측의 소송에 대해 시게오키가 비밀리에 보낸 서한 1통은 최의길이 전해 받았으나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형언길이 돌아온 후에 상세한 사정을 알고 처지해도 늦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형언길 일행이 1631년 문위행으로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변례집요』의 내용에 따른다.

25) 『변례집요』 권18, 도해, 신미(1631) 9월; 임신(1632) 8월, 9월.

26) 김문자는 방치된 원인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과의 국교회복을 위해 이미 1606년 국서개작에 대해 묵인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김문자, 「家康 국서문제의 僞造 및 改作과 동아시아」, 『한일관계사연구』 58, 한일관계사학회, 2017.)

27) 민덕기, 위의 책, 2007, 258~266쪽; 심민정, 위의 글, 2023, 134쪽.

성을 인식한 老中은 1634년 11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조선에 왕래하는 송사선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²⁸⁾ 이에 따라 도주 측과 조흥 측은 모두 각각 사자 1명씩을 선발하고 도항증명서를 발급하여 1634년 12월 2일에 송사선의 도항을 정지한다는 서한을 보내었다. 대마도주가 조선에 보낸 서한에는 ‘요즘 도항하는 배가 없는 것은 조흥과의 소송이 있기 때문이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측의 도항을 정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²⁹⁾

1635년 3월 11일까지 마지막 심리가 이루어진 후 그 달 14일 판결문에서는 대마도주에게는 죄가 없고 국서개작은 모두 유천씨가 행한 것으로 정리³⁰⁾하였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를 조선 사절이 에도(江戶)로 행차했다. 1634년 9월 21일 쇼군이 조선의 마상재를 보고싶다는 의향을 내비치자 대마도는 마상재를 초청하는 사자를 파견하여 그 해 12월 藤智繩 일행이 조선에 도착하였다.³¹⁾ 조선에서도 이 소송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마상재 파견을 결정하였으며, 1635년 1월에 흥희남과 최의길은 마상재인과 함께 조선을 출발하였다.³²⁾ 『증정교린지』에 의하면, 이 사행에서 흥희남이 대마도주의 무고함을 변론하였고³³⁾, 이와 아울러 도주를 설득하여 세견선을 겸대하도록 했다³⁴⁾고 한다. 실제 이것이 총25척의 연례송사선을 접대하던 것에서 정관이 탄 9~8척의 연례송사선만 겸하여 접대하는 겸대제 교섭의 시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³⁵⁾, 분명 단초가 되

28) 『柳川調興公事記錄』上, 갑술년(1634) 11월 8일.(김상준·윤유숙 역, 앞의 책, 2015, 60쪽.)

29) 『柳川調興公事記錄』上, 갑술년(1634)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김상준·윤유숙 역, 앞의 책, 2015, 61~63쪽.)

30) 『柳川調興公事記錄』上, 을해년(1635) 3월 14일.(김상준·윤유숙 역, 앞의 책, 2015, 90~92쪽.)

31) 『변례집요』 권1, 별차왜, 갑술(1634) 12월.

32) 『변례집요』 권1, 별차왜, 을해(1635) 1월.

33) 이 내용에 대해 윤유숙은 막부가 흥희남과 최의길에게 공식적으로 발언할 기회를 부여한 적도 없었고, 관련 기록(宗家記錄) 등도 부재하다고 하였다.(윤유숙, 「조선후기 문위행(問慰行)에 관한 재고(再考)」, 『한일관계사연구』 50, 2015, 13~14쪽)

34) 『증정교린지』 제1권, 兼帶.

35) 심민정은 1635년 겸대 논의는 국서개작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635년과 1636년 2년치의 세견선이 정지된 까닭에 2년 묵의 세견선에 대한 겸대에 대해서만 논의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세견선을 비롯한 수도서선 등의 송사선 중 정관이 승선하여 접대할 선척 수를 8~9선으로 줄이는 연례송사 겸대제를 위한 협의 과정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심민정, 앞의 글, 2023, 134~138쪽.)

었음은 틀림없다.

우선 대마도주는 막부의 허락을 받아 1635년 6월 島主差倭를 파견하여 송사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알리고³⁶⁾, 그해 11월에는 平智友를 파견하여 송사선을 재개한다는 사실과 조흥·이정암·유방원의 도서와 의관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서한³⁷⁾을 조선으로 전달³⁸⁾하였다. 송사선의 파견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들은 조선은 2년 묵의 접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염려되었다. 이런 조선 측의 상황과 부담을 전달받은 대마도는 藤智繩을 통해 당시 도해역관이었던 흥희남 편으로 1635년 1년 치의 세견선은 한 번에 겸대하도록 하였다는 뜻을 전해왔다.³⁹⁾

하지만 1636년 송사선에 대한 접대도 부담이었다. 같은 해에 통신사 파견까지 겹쳐 모든 준비를 다하려면 조선의 인적·물적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1636년 6월, 조선 측은 차왜 藤智繩에게 1636년 묵의 송사선도 겸대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즉 특송1·2·3선의 3척을 1使로 하고, 세견선 17척 중에 이미 나온 배를 제외하고 아직 나오지 않은 14척 또한 1사로 하여 겸대하게 해달라고 전달⁴⁰⁾한 것이다. 10월에 藤智繩은 대마도주의 수표를 가지고 와서 겸대를 허가한다는 뜻을 전했다. 당시 아직 나오지 않았던 3특송·만송원송사·평연삼송사 및 나머지 세견선은 2특송이 일괄하여 겸대하기로 하였다.⁴¹⁾

두해분의 연례송사 겸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조선은 통신사호행차왜로 동래에 와 있던 藤智繩과 平成春의 상선연 설행 때 강우성·흥희남 등을 통해 정축년(1637) 이후부터 송사선의 겸대 및 접대 잡물을 줄일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개유하도록 했다.⁴²⁾ 확실한 결과를 얻지는 못한 채 통신사가 돌아

36) 『변례집요』 권1, 별차왜, 을해(1635) 6월; 『柳川調興公事記錄』 上, 을해년(1635) 4월 14일: 6월 6일.(김상준·윤유숙 역, 앞의 책, 2015, 102~114쪽.)

37) 『柳川調興公事記錄』 中, 을해년(1635) 11월.(김상준·윤유숙 역, 앞의 책, 2015, 130~136쪽.)

38) 平智友는 1635년 12월에 부산의 왜관에 도착하였으며, 서한과 함께 조선이 유전조흥에게 주었던 送使의 도서 및 衣冠, 以醢菴과 流芳院의 도장 등도 함께 반환했다.(『변례집요』 권1, 별차왜, 을해(1635) 12월.)

39) 『변례집요』 권2, 送使, 병자(1636) 4월.

40) 『변례집요』 권2, 送使, 丙子(1636) 6월.

41) 『변례집요』 권2, 送使, 丙子(1636) 10월.

오기 전까지 1637년 연례송사선은 일시적으로 정지⁴³⁾되었다. 여기에는 병자호란 시기 막바지라는 또 다른 외교 상황 등도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통신사가 돌아온 후 조선 조정에서는 강우성을 비롯하여 京譯官 홍희남, 李長生 등에게 여러 차례 왜관을 왕래하게 하며⁴⁴⁾ 차왜와 송사선의 겸대제 시행을 공식적으로 규례화하는데 성공하였다. 1637년 5월, 藤智繩과 卞成春은 대마도주의 뜻으로 연례송사 겸대를 허락한다는 내용을 동래부에 전했으며, 2·3특송선, 세견5선부터 17선까지 兼帶하여 順付하는 것이 규정되어 시행되었다.⁴⁵⁾ 이처럼 연례송사 접대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결과를 낳았던 겸대제의 시행은 야나가와잇켄으로 인한 연례송사 정지가 그 시초가 되었다.⁴⁶⁾

3. 연례송사 정지 사례

겸대제 시행으로 인해 조선은 일본사신에 대한 접대비용 등이 상당히 경감되었다. 하지만 겸대제 교섭 과정에서 새로이 접대대상이 되기 시작한 차왜로 인해 실제 일본사신에 대한 전체적인 접대비용이 감소했다고 볼 수만은 없었다.⁴⁷⁾ 겸대제를 시행한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대마도에서 보내는 송사에 대한 접대비용 부담 때문이었는데, 연례송사 접대비용을 경감할 기회가 주어진 순간 각종 명목의 別差倭 파견이 시작되면서 일본사신 전체에 대한 접대비용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 측에서는 초량으로 왜관이 이전하는 상황을 틈타 비용 경감에 대해 고심하게 되었고, 이는

42) 『歲船定奪謄錄』 제1, 丁丑(1637) 3월 초9일.

43) 『변례집요』 권2, 送使, 丁丑(1637) 1월.

44) 『歲船定奪謄錄』 제1, 丁丑(1637) 4월 15일.

45) 『歲船定奪謄錄』 제1, 丁丑(1637) 5월 30일; 『변례집요』 권2, 送使, 丁丑(1637) 5월.

46) '심민정, 「조선후기 통신사행으로 인한 연례송사 정지와 제 문제」, 『조선통신사연구』 37, 조선통신사학회, 2024, 5~14쪽.'의 연구 내용이 반영됨.

47) 전체 접대비용에 대해 『증정교린지』에서는 '義成이 이 兼船의 일을 빙자하여 교묘한 명목으로 (차왜가) 자주 왕래하였으나 금지할 수 없었다. 그 비용이 送使의 배가 넘어 드디어 무궁한 폐단이 되었다.'고 하였다. (『증정교린지』 권2, 差倭)

1682년 임술통신사행에서 별차왜 파견을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임술약조의 약정이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⁴⁸⁾ 하지만 임술약조를 통해 차왜를 재정비하는 것으로는 접대비용을 줄이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례송사가 정지되어 접대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은 조선의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처럼 조선 내외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연례송사에 대한 접대비용을 마련하기 힘들어질 때에는 대마도와의 교섭을 통해 연례송사를 조선에 파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는 곧 규례가 되어갔다.

연례송사의 정지가 정례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초량으로 왜관이 이전하는 전후이다. 그 원인은 초량왜관 이전 전후로 달라진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왜관 이전 후 조선 측에서 대마도와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외교적으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경제적으로는 왜관 이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부담감, 왜관으로 내도하는 일본사신에 대한 접대비용 경감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다.

이런 원인에 의해 연례송사가 정지되는 사례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왜관 건물의 노후화나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해 왜관 수리나 큰 규모의 보수가 필요할 때이다. 두 번째는 통신사행이 있을 경우 조선에 부담이 과중되는 것을 덜기 위해 연례송사 파견을 정지한 것으로, 왜관 이전 후 1682년 임술통신사행 때부터 시작되었다. 마지막은 규례화되지 않은 특수한 경우로, 차왜가 한꺼번에 많이 내도하거나 기근 등 자연재해의 발생, 혹은 착오에 의한 疊到 등으로 연례송사 접대가 어려워질 경우였다.

개별 사례마다 각각의 원인과 제 문제들이 존재했지만 본고에서 개별 사안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주요 사건들은 추가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연례송사 정지가 관례화되어 가는 과정, 정지를 위한 절차를 확인하는 한편 조일 양측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거쳤던 사안을 일부 선택하여 분석한다.

48) 임술약조의 약정과 일본사신에 대한 접대비용 경감에 대해서는 '심민정, 「1682년 임술통신사행의 임술약조 강정과 조일 교린관계의 재편」, 『한일관계사연구』 73, 한일관계사학회, 2021'을 참조할 만하다.

1) 왜관 수리 및 개축

초량왜관에서는 매달 말 동래부사가 훈도·별차 및 監官에게 순시하여 왜관 시설물이나 상태 등을 점검하여 보고하게 했다. 만약 보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훈도와 별차가 手本을 작성하여 釜山鎭에 보고하고, 부산진은 多大鎭·西生鎭 등 10 여 곳의 진에 분정하여 수리 및 보수를 하게 하였다. 단 감동하는 관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대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왜관에 요청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했는데, 대체로 수 십 년에 한 번씩 대공사가 진행되었다. 1700년(庚辰)에는 왜관의 동서대청, 동헌·서헌, 좌우행랑 및 재판차왜 家畝 등의 개보수를 위한 큰 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대마도 奉行倭가 문서를 갖추어 동래부사에게 전언하면서 그해의 연례9송사는 정지되었다. 『춘관지』, 『春官通考』 등에 의하면, 이때부터 왜관 수리를 위한 공사 시에는 연례송사가 정지되기 시작했다⁴⁹⁾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왜관 건물의 건축·수축을 이유로 연례송사가 정지되기 시작한 것은 더 이른 시기인 1677년(丁巳)부터였다. 1677년은 새로이 초량왜관이 조성되어 이관이 완료되는 1678년의 전년으로, 이듬해에 왜관 이전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 게다가 왜관 건물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사신을 맞이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대마도에서 연례송사선을 파견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조선에서도 송사들을 접대하고 외교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은 당연했다. 이에 동래부사 李馥의 건의에 의해 봉행왜는 연례송사 정지를 고하는 서한을 직접 지참하여 동래부에 제출⁵⁰⁾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1698년(戊寅)에도 관수왜가 館宇의 수리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1700년(庚辰)에는 왜관의 관우 수리를 위해 연례송사가 정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1677년의 사례가 시초가 되었음은 1723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도 왜관 수리로 인해 연례송사 정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봉행왜가 제출하였는데, 이때에도 1677년을 전례로 언급⁵¹⁾하고 있다.

49) 『春官志』 권3, 倭館, 倭館修理; 『春官通考』 권74, 賓禮, 倭館修理.

50) 『同文彙考』 2, 附編 卷之十五, 進獻 六, 馬島奉行等告停止歲船書.

51) 『변례집요』 권6, 書契路引, 癸卯(1723) 3월.

1677년을 시작으로 왜관 개·수축과 관련하여 연례송사가 정지된 사례는 7건으로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왜관 수리 및 개축 등으로 인해 연례송사가 정지된 사례

| | 시기 | 내용 | 비고 |
|---|--------------|--|---|
| 1 | 丁巳 (1677) | 1678년 신왜관인 초량왜관으로의 이건을 위해 연례9송사 정지 | • 신왜관 조성 • 공식적 연례송사 정지 첫 사례 |
| 2 | 庚辰 (1700) | 왜관 동·서대청, 동·서헌, 좌우행랑, 재판차왜 家畝 수리로 연례9송사 정지 | • 왜관수리시 연례송사 정지 첫 사례 |
| 3 | 癸卯 (1723) | 서관(兪官屋) 수리로 인해 연례8송사 정지. | • 1월 세견1선~8월 부특송 정지 • 서계에 回謝의 뜻을 포함하기 시작. |
| 4 | 己巳 (1749) | 동·서관 수리로 인해 연례8송사 정지 | • 1749년 3월 1특송~1750년 2월 이정암 정지 |
| 5 | 癸巳 (1773) | 동·서관 수리로 연례8송사 정지 | • 1773년 2월 이정암~1774년 1월 세견3선 정지 |
| 6 | 壬戌 (1802) | 동·서관 대수리로 연례8송사 정지 | • 1802년 1월 세견1선~8월 부특송 정지 |
| 7 | 己卯 (1832) | 서관 수리로 연례5송사 정지 | • 1832년 1월 세견1·2·3선, 2월 세견4선·이정암 정지. • 3월 1특송사부터는 정례대로 파견. |

※ 『변례집요』, 『비변사등록』, 『조선왕조실록』, 『각사등록』, 『전객사일기』, 『승정원일기』, 『분류기사대강』을 참조하여 작성함

연례송사선은 월별로 출래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었는데, 1월에는 세견 1·2·3선이, 2월에는 세견 4선과 이정암송사가 출래하였다. 그리고 3월에는 1특송사, 6월에는 만송원송사·평언만송사가, 8월에는 부특송사가 출래하는 것이 규정이었다.⁵²⁾ 이 규정에 따라 월별로 정지되는 연례송사도 달라졌다. 첫

52) 『증정교린지』 권1, 年例送使 ; 兼帶.

번째 연례송사 정지는 앞서 언급한대로 1677년 초량으로 신왜관이 조성되어 이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훈도·별차 및 감동관의 순시 결과 부산진에서 주관하여 왜관을 수리하기 힘들 정도로 대공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왜관의 동·서대청, 동·서헌과 행랑 및 재판차와 관련 가사를 수리하기 위해 연례송사를 정지한 경우이다. 1700년의 경우는 왜관수리를 위해서 처음으로 연례송사가 정지된 것이며, 이후 왜관에 대공사가 필요하거나 화재 등의 발생으로 대규모 수리가 이루어질 경우 연례송사를 정지시키는 전례가 되었다. 1677년과 1700년은 송사가 1년에 총 9차례 파견되는 기간이었으므로 1년치 9송사가 모두 정지되었다.

이어 1723년, 1773년, 1802년에는 모두 왜관 건물 중 동·서관을 수리하기 위해 연례송사를 정지하였다. 이 시기에는 연례송사가 8차례 파견되었던 시기였으므로 8송사가 정지되었다. 기존에 兎名圖書를 발급받아 연례송사로 조선에 건너왔던 平彦滿送使(平義眞送使)가 平義眞 사후 1702년 혁파되면서 연례8송사로 변경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1832년은 서관만 수리가 이루어졌던 탓인지 연례8송사 중 5차례의 송사만 파견이 정지되고 3월에 파견되었던 1특송사부터는 정례대로 파견되었다.

이상 <표 2>를 통해 왜관 개축 및 수리로 인한 연례송사 파견 정지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 사례들에서 국내의 기록들만 가지고는 개략적인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연례송사 파견 정지를 둘러싼 조선과 대마도 양측의 소통이나 협의과정을 확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마도 측 기록과 조선 측 기록을 함께 비교하면 왜관 수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공사가 필요할 때 연례송사가 정지되는지, 1년 치 연례송사가 모두 정지되었는지, 양측의 협의 과정이나 협의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여러 사례 중 1723년의 경우 대마도 측의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있고 자세하여 양측의 소통 상황과 협의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723년을 기준으로 왜관수리의 결정부터 연례송사 정지 결정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림 왜관을 수리하기 전부터 연례송사 파견을 정지하던 규례는 1773년부터는 왜관 수리를 개시한 후부터 정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⁵³⁾ 이는 연례송사를 왜관 수리 전후 언제 정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에 대해 계속 논의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였다. 1723년에도 2월부터 왜관수리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연례송사는 언제부터 정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속되었다. 그만큼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하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거듭된 논의 끝에 연례송사는 수리 이전인 1월 송사부터 정지하기로 결정하였다.⁵⁴⁾ 1749년의 경우에는 6~7월경부터 왜관 수리가 이루어진다고 예정하였는데, 논의 결과 3월에 건너오는 1특송선부터 정지하였다.⁵⁵⁾ 1723년, 1749년 모두 왜관 수리 전부터 연례송사 파견을 정지하였지만 왜관 수리 전과 후 언제부터 송사를 정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측이 논의를 거듭해도 명쾌한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 결국 거듭된 논의 끝에 왜관 수리가 시작된 후에 건너오는 연례송사를 정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1773년부터는 왜관 수리 시작 후 연례송사가 정지되었다.

한편 왜관 수리가 끝나고 정지된 연례송사가 다시 파견되기 시작할 때 조선이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서계 중에 감사의 뜻을 포함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대마도와 조선 측의 서계 논쟁 끝에 대마도주에게 1719년 통신사행으로 인해 연례송사를 정지해준데 대한 감사의 뜻을 1720년 서계에 포함한 것이 공식적인 시작이 되었다.⁵⁶⁾ 이 조치는 통신사 파견으로 인한 연례송사 정지에 그치지 않고 왜관 수리로 인해 연례송사가 정지될 때에도 서계 안에 대마도주에 대한 감사의 뜻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1723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연례송사 정지에 대한 감사의 뜻이 회답서계에 기재되었

53) 『변례집요』 권11, 館字, 癸巳(1773) 4월. ‘而倭館修理始役之後, 八送使停止, 自是前例’

54) 『分類紀事大綱 Ⅱ』(對馬島宗家文書資料集 2), 「分類紀事大綱17」, 元文五 庚申 西館修理之事, 享保六 辛丑(1721) 12월26일(음); 享保六 壬寅(1722) 12월3일(음); 享保六 壬寅(1722) 12월26일(음); 『分類紀事大綱Ⅲ』(對馬島宗家文書資料集 3), 「分類紀事大綱21」, 享保八 癸卯年 西館修理=付八送使停止之事, 享保八 癸卯(1723) 1월09일(음).

55) 『分類紀事大綱 V』(對馬島宗家文書資料集 6), 「分類紀事大綱3」, 東西館修理·附信使=付一旦時節延之事御送使停止之事, 寬延貳己巳年(1748) 3월25일(음).

56) 『승정원일기』 경종즉위년(1720) 7월 7일 壬申.

다.57) 그렇다면 감사의 내용을 포함한 회답서계는 언제 보내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회답서계는 통신사행이나 왜관 수리 공사가 완전히 끝난 후 처음으로 조선에 건너오는 연례송사의 회답 중에 각별히 감사의 뜻을 첨가하여 작성하게 했다. 1723년 왜관 수리 후에는 1724년 1월 세건1선의 서계에, 1749년 왜관 수리 후에는 1750년 3월에 건너온 1특송사의 회답서계에 감사의 뜻을 첨입하였다.58)

이처럼 연례송사 정지에 대해 조선 측이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은 1년에 8~9차례 내도하는 연례송사에 대한 접대비용이 상당히 경감되었기 때문이다. 왜관 수리로 인해 연례송사가 정지될 때에는 원래 송사가 파견되었을 때 조선에서 지급하던 잡물 등은 代官이 계산하여 받아갔으나59), 이때 연향에 소용되는 물품은 지급하지 않았다.60) 원래 송사가 파견되면 연향잡물과 5일 잡물을 비롯하여 채류시 땔나무와 숲 등도 지급하였는데, 우선 송사가 체재하지 않으므로 연향에 소요되는 품목은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하지만 5일잡물은 계산하여 대관에게 입급하였고, 땔나무와 숲도 절반을 입급해야 했으므로61) 송사가 정지된다고 해서 사신 접대비용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선 측은 연례송사에게 지급되는 물품의 감급으로 왜관 수리를 비롯하여 사신 접대에 들어가는 비용의 지출이 폐해 제거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1700년 연례송사 정지를 둘러싸고 동래부사가 올린 다음의 狀啓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7) 『승정원일기』 영조26년(1750) 12월 6일. 국사편찬위원회 소재 이 시기 『승정원일기』 기사 타이틀을 ‘회답서계 중에 使謝를 정지하라는 뜻을 넣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草記’라고 하였는데, 본문 중 ‘今此一特送使回答書契中 停使謝意, 措辭添入撰出之意, 分付, 何如?’를 오역한 것으로 보인다. ‘회답서계 중에 사신(연례송사)을 정지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넣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草記’라고 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58) 『전객사일기』 4, 영조50년(1774) 미상.

59) 『변례집요』 要1, 年例送使船數人數, 館中有色目往來交遞倭.

60) 『변례집요』 권7, 宴禮進上, 丁巳(1677) 3월. ‘因館宇新創, 丁巳條九送使停止不出來, 故宴需雜物, 減不給事’

61) 『숙종실록』 숙종23년 丁丑(1697) 9월 5일. ‘九送使內, 只出送第一船, 五日雜物, 雖入給代官, 宴需 減除, 柴炭折半入給’; 『통신사등록』 제3책, 壬戌(1682) 3월 초2일.

送使가 출래하지 않으면 감소하는 쌀[米]은 300~400여 석에 이릅니다. 이는 기와를 굽는 역에 쓰이는 비용을 보충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왜인이 (왜관을) 수리하는데 비용을 지급한다면, 노역하는 백성들의 폐해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⁶²⁾

물론 위의 사례는 왜관 수리시 연례송사 정지에 대한 사례이지만, 통신사행 파견이나 기타 원인으로 송사가 정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사신과의 외교, 무역, 접대 등의 일은 왜관과 왜관이 소재한 지역에 부가된 특수 임무였기 때문이다.

2) 통신사행 파견

통신사행이 있을 경우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연례송사를 정지하게 된 것도 일례로 자리잡았는데, 1682년 임술통신사행부터 시작되었다. 임술통신사 이전에는 연례송사가 정지되지 않고 왜관으로 내도하여 기존대로 업무를 보았다. 하지만 통신사행 준비와 맞물려 연례 9송사까지 그대로 조선에 파견되어 온다면 각종 응대 비용은 물론이고 업무 또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될 것이기 때문에 역관들이 폐단을 우려하여 봉행왜를 통해 대마도주에게 요청하도록 하였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1682년 통신사행에서는 처음으로 연례송사가 정지되었다.⁶³⁾

연례송사 정지와 관련한 조치들은 초량으로 왜관이 이전하는 상황 하에서 연례송사가 정지된 1677년 사례⁶⁴⁾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례 9송사가 모두 정지되었으며, 한꺼번에 9송사의 서계와 별폭이 모두 들어올 경우 폐단을 우려하여 9송사의 분량을 2~3차례로 나누어 역관을 통해 들이도록 했다. 또한 9송사에게 지급할 잡물도 정사년(1677)의 예에 의거하여 연향잡물은 減除하고, 5일잡물은 本色, 혹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미곡으로 계산하여 편의대로 대관에게 들여보내게 했다. 그리고 땔감과 숯은 절반으로 줄여 입급하게 하였

62) 『변례집요』 권11, 館宇, 戊寅(1698) 12월. '送使不出來, 則所減之米, 至於三四百餘石, 此足以補用於燔瓦之役, 且給價倭人修補, 則亦可除勞民之弊事'

63) 『통신사등록』 제3책, 壬戌(1682) 3월 초2일: 『春官志』 권3, 通信使, 島倭請買及八送使停止.

64) 앞 절 '왜관 수리 및 개축' 부분 참조.

다.⁶⁵⁾ 이러한 조치들은 이후 1711(辛卯), 1719(己亥), 1747(丁卯), 1763(癸未), 1811(辛未)년 통신사행에서도 그대로 연례송사 정지의 전례로 적용되었다.

한편 연례송사 정지와 관련하여 봉행이 서계를 보내고 회답하는 것에 대해서 조선과 대마도 양측의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다. 서계와 답서를 둘러싼 양측의 충돌은 다음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연례송사 정지 서계 접수 및 답서 분쟁

| 시기 | 내용 | 서계 접수 및 답서 |
|--------------|---|--|
| 丁巳 (1677) | 초량왜관이건신축으로 인해 연례송사 정지 서계를 봉행왜 가 보냄. (『동문회고』) | • 받들어 上送하였으나 回下는 없었음. (『邊例集要』) • 동래부에서 별도로 회답함. |
| | 도주가 만약 서계를 보내면 차왜를 차정해야 하는데 도리어 폐단이 있을 것이므로 奉行이 직접 서계를 작성함.(『邊例集要』) | |
| 壬戌 (1682) | 통신사행으로 인해 봉행왜가 연례송사 정지 서계를 보냄.(『통신사등록』) | • 예조로 上送한 후 논의를 거쳐 봉행왜 서계를 받아들이기로 함. • 동래부에서 별도로 대마도주에게 회답함. |
| 庚辰 (1700) | 왜관 수리로 인해 봉행왜가 연례송사 정지 서계를 보냄.(『동문회고』) | • 받들어 上送하였으나 回下는 없었음. (『邊例集要』) • 동래부에서 감사의 뜻을 담은 답서를 보냄.(『分類紀事大綱 II』(對馬島宗家文書資料集 2)) |
| | 이때 도주가 대마도에 있지 않고 에도에 있었으므로 서계를 작성하지 못하고 봉행에게 위임함.(『邊例集要』) | |
| 辛卯 (1711) | 통신사행으로 인해 봉행왜가 연례송사 정지 서계를 보냄. | • 1714년 7월에 봉행왜의 서계를 접수함. • 4년 후인 1715년 예조에서 세견제1선에 감사의 뜻을 담은 서계를 보냄.(『分類紀事大綱 II』(對馬島宗家文書資料集 2).) |
| | 1711년 동래부사가 봉행왜의 서계를 수령하기를 거부하였고 비변사에서도 접수를 허락하지 않다가 1714년 7월에 가서야 비변사에서 봉행왜의 서계 접수를 허락함. 이듬해(1715) 예조에서 세견1선의 회답서계 중에 대마도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추가하여 보냄. | |

65) 『통신사등록』 제3책, 壬戌(1682) 3월 초2일.

| 시기 | 내용 | 서계 접수 및 답서 |
|--------------|---|--|
| 己亥 (1719) | 통신사행으로 인해 봉행왜가 연례 송사 정지 서계를 보냄. | • 비변사가 특별히 받아들일 것을 허락함 • 예조에서 이듬해 세건선 편 서계에 감사하는 뜻을 첨가하여 보냄. (『分類紀事大綱 Ⅱ』(對馬島宗家文書資料集 2),) |
| 癸卯 (1722) | 왜관 수리로 인해 봉행왜가 연례 송사 정지 서계를 보냄. (『동문회고』) | • 받들어 上送하였으나 回下는 없었음. (『邊例集要』) |
| | 봉행왜가 보낸 서계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왜관수리 관련 시기인 丁巳(1677), 庚辰(1700)년, 통신사행 시기인 壬戌(1682), 辛卯(1711), 己亥(1719)년 사례를 상고함. 결국 계속 받아들인 전례가 있어 봉행왜의 서계를 물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上送함. (『邊例集要』) | |
| 戊辰 (1748) | 통신사행으로 인해 봉행왜가 연례 송사 정지 서계를 보냄. | • 비변사가 특별히 받아들일 것을 허락함 • 예조에서 이듬해 세건선 편 서계에 감사하는 뜻을 첨가하여 보냄. |
| | 1747년 10월 26일 봉행왜가 보낸 연례송사 정지 서계를 물리쳤다가 1747년 11월 27일 비변사에서 특별히 받아들일 것을 허락함. | |
| 己巳 (1749) | 왜관 수리로 인해 봉행왜가 연례 송사 정지 서계를 보냄. (『동문회고』) | 바로 직전 해인 1748년에 통신사행으로 봉행왜가 연례송사 정지 서계를 보내고 비변사의 허락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庚辰(1700), 癸卯(1722)의 전례가 있으므로 서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방하다고 결정함. (『邊例集要』) |
| | 1700, 1722년 서계에서는 봉행왜 등의 성명 아래에 각각 圖書를 찍었는데, 이번 서계에서는 봉행 등 3인의 성명을 나열하고 큰 圖書 하나만 찍었으므로 서계를 물렸다가 전례대로 고쳐서 다시 받도록 함. (『邊例集要』) | |
| 1763 | 1763. 8. 봉행왜가 통신사행으로 인한 연례8송사 정지 서계를 보냄 | 1763. 8. 25. 비변사가 받아들일 것을 허락함. |

※ 『변례집요』, 『비변사등록』, 『조선왕조실록』, 『각사등록』, 『전객사일기』, 『승정원일기』, 『분류기사대강』을 참조하여 작성함.
 ※ 음영은 통신사행을 이유로 연례송사 정지 서계 논의가 있었던 시기이다.

1723년 3월 봉행왜가 보낸 서계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이전의 사례들을 상고하기⁶⁶⁾ 시작했다. 이는 같은 해 2월에 대마도 측에서 있었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1677년부터

66) 『邊例集要』 권6, 書契路引, 癸卯(1723) 3월.

대마도에서는 봉행왜가 대마도주를 대신하여 연례송사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서계를 동래부에 제출해왔다. 1722년에도 연례송사 정지의 뜻을 담은 서계를 보내었는데 동래부에서 감사의 뜻을 담은 답서를 대마도주 앞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대마도 측은 조선 측이 감사의 뜻을 담아 대마도에 보낸 답서의 전례들을 열거하였다. 1700년 왜관 수리로 인해 연례송사가 정지되었을 때에는 조선에서 직접 감사의 뜻을 담은 서계를 보냈다고 하였다. 또한 1711년 통신사행으로 송사가 정지되었을 때는 4년이 지난 후 1715년 세견제1선에 예조에서 보낸 답서 중 감사의 뜻이 들어가 있었다⁶⁷⁾고 했다.

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제껏 봉행왜의 서계에는 별도로 답서를 보내지 않았으며, 답서보다도 연례송사 정지의 뜻을 누가 서계로 작성하여 조선으로 보내는지 그 주체가 더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기왕에 봉행왜는 훈도·별차와 동급이고 대마도주는 동래부사와 동급으로 볼 수 있는데⁶⁸⁾, 봉행왜가 동래부 앞으로 서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는 동래부사가 대마도주 앞으로 감사의 답서를 제출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 측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봉행왜의 서계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로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대마도주가 에도에 상경해 있어 대마도 내에 없는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봉행왜가 서계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대마도주가 도내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행이 서계를 작성했다면 더더욱 예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682년 임술통신사행으로 연례9송사를 정지하였을 때 봉행들의 서계가 오자 문제가 될 만하여 동래부에서는 비변사로 올려보내어 받을 것인지 물릴 것인지를 문의한 적이 있었다.⁶⁹⁾ 봉행왜가 서계를 작성하여 보낸 데 대한 대마도의 입장은, 첫째 정사년(1677)에 신관 조성 후 연례9송사를

67) 『分類紀事大綱 II』(對馬島宗家文書資料集 2), 元文五 庚申 西館修理之事, 癸卯(1723) 2월 12일(음); 『分類紀事大綱 III』(對馬島宗家文書資料集 3), 享保八 癸卯年 西館修理ニ付八送使停止之事, 享保八 癸卯(1723) 2월12일(음).

68) 1711년 통신사행으로 인한 연례송사 정지 시 봉행왜의 서계를 접수하는 논의 과정에서 ‘훈도와 별차가 대마도주에게 상대하는 것과 봉행이 동래부에 상대하는 것이 같다’(『통신사등록』 제6책, 辛卯(1711) 4월 11일)고 표현하고 있다.

69) 『통신사등록』 제3책, 壬戌(1682) 3월 초2일.

정지하였을 때에도 봉행 등의 서계만 보내었고, 동래부에서 회답한 전례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마도주가 서계를 작성하여 보내려면 별도로 차왜를 차정해야 하므로 폐단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입장을 확인한 조선 측은 우선 근거가 될 만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도주의 서계는 마땅히 차왜가 있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라 하여 일단 봉행왜가 작성해 보낸 서계를 접수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조건이 붙었다. 즉 대마도주가 대마도에 있으면서 봉행이 서계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은 예에 맞지 않는 외람된 행동이니 앞으로 도주가 대마도 내에 있을 때에는 봉행 등이 서계를 작성해 보내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은 후에 서계를 접수하였다.⁷⁰⁾

서계 접수 문제가 일단락되는가 했지만 1711년 통신사행에서 또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1711년 동래부사였던 權以鎭은 통신사행으로 인해 연례8송사를 정지하는 일로 봉행왜 등이 보낸 서계를 처음부터 접수하지 않고, 서계를 동래부사에게 보낸 훈도와 별차를 책유하였다. 분명 임술년(1682)에 대마도주가 도내에 있을 때에는 봉행 등이 서계를 작성하여 보내지 않기로 하였는데 당시 도주가 대마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봉행이 서계를 작성하여 보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권이진 의 의도는 이해 하지만 처음부터 연례송사 정지의 일만 보고하고 봉행왜의 서계를 받아들이지 말지에 대해서는 장계를 올리지 않고 권이진이 독단적으로 접수 불가 처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추고하도록 했다. 또한 훈도와 별차는 수사에게 명하여 곤장을 치도록 하였다.⁷¹⁾ 동래부사가 서계를 받지 않은데다가 비변사에서도 봉행왜의 서계가 아닌 대마도주가 서계를 바치면 회답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조선 측에서 봉행서계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 대마도 측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갑오년(1714) 7월에 가서야 서계를 접수하였다.⁷²⁾

봉행왜의 서계 접수 논의가 이렇게 치열했던 이유는 대마도주가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감사의 뜻을 담은 회답서계를 받는 일이 절실했

70) 『통신사등록』 제3책, 壬戌(1682) 3월 초2일.

71) 『통신사등록』 제6책, 辛卯(1711) 4월 11일; 『邊例集要』 권6, 書契路引, 辛卯(1711) 3월, 回啓.

72) 『통신사등록』 제8책, 己亥(1719) 7월 27일.

기 때문이다.⁷³⁾ 그 과정에서 조선 측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서계 발신인과 수신인 구도가 문제시 된 것이다. 회답서계를 간절히 원했던 대마도 측은 1712년 2월 관수왜를 통해 재차 대마도주 앞으로의 회답서계를 요청했다. 조정에서 논의한 결과 회답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가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대마도주가 스스로 서계를 써서 보내면 회답을 하겠다⁷⁴⁾는, 기존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1712년 10월에 행해진 1특송사의 다례일에 관수왜가 또 다시 회답서계를 요청하였다.⁷⁵⁾ 조선 측에서는 봉행왜의 서계를 아예 접수한 일조차 없다고 거부하였지만 이후 관수왜의 요청은 계속 이어졌다. 급기야 갑오년(1714) 7월에 재판왜가 연례송사 정지 규례를 폐지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대마도에서는 전례에 따라 봉행왜가 서계를 제출하여 연례송사를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측에서는 전례를 무시하고 대마도주에게 회답서계를 주지 않고 있으므로 연례송사를 정지하는 규례도 이에 따라 폐절하겠다는 것이었다.⁷⁶⁾ 이에 예조에서는 논의를 거쳐 별도로 회답서계를 보내지 않고 1715년 세견제1선 편으로 보내는 회답서계에 대마도주에 대한 감사의 뜻을 포함하기로 하였다.⁷⁷⁾

연례송사 정지 규례를 폐지하겠다는 강력한 대마도 측의 주장 때문인지 1711년 통신사행 관련 서계 건을 끝으로 이후 봉행왜의 서계 접수 논의는 일 단락되었다. 1719년 기해통신사행에서 또 다시 봉행왜가 연례송사 정지 건으로 서계를 작성하여 동래부로 보내었는데, 이번에는 조선에서 도에 지나

73) 세견선 정지와 관련하여 대마도가 막부에 모든 상황을 보고한 것은 아니다. 다만 대마번의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지는 상황에서 막부 측에 경제적 원조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윤유숙, 「조선 후기 문위행에 관한 재고-1635년 사행 및 막부의 재정원조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0, 17~18쪽 참조), 이 과정에서 통신사의 내빙이나 연례송사 정지로 인한 교역 중지 등은 막부의 원조를 요청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조선 측의 회답서계는 그 증빙 자료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74) 『속중실록』, 숙종38년(1712) 5월 20일 임인.

75) 『邊例集要』 권6, 書契路引, 壬辰(1712) 10월.

76) 『邊例集要』 권4, 裁判, 甲午(1714) 7월.

77) 『分類紀事大綱 Ⅲ』(對馬島宗家文書資料集 3), 正德三 癸巳年 八送使停止謝書之事, 正德四 甲午(1714) 06월 01일(음); 『邊例集要』 권6, 書契路引, 乙未(1715) 4월.

치고 예의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이미 누차 허락하여 받은 전례가 있으니 지금에 와서 서로 다투기보다 전례대로 서계를 승인하게 하였다.⁷⁸⁾ 통신사행이 끝난 후 연례송사 파견이 재개되는 시점에 작성되는 회답서계의 전달도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신묘년(1711) 통신사 때 연례송사를 정지하면서 이듬해 파견되는 제1선의 회답서계 안에 감사의 뜻을 첨가한 사례가 그대로 적용되어 승문원에 전례대로 서계를 수정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졌다.⁷⁹⁾ 다만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답서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봉행왜가 보낸 서계에는 일절 답신하지 않는 것으로 조선 측의 격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통신사행 → 봉행왜 연례송사 정지 서계 작성 → 동래부 접수 → 연례송사 정지 → 통신사행 종료 → 이듬해 세건1선 편에 보내는 회답서계에 감사의 뜻을 포함’하는 절차가 정례화되었다.

3) 규례 외 기타 사례

연례송사는 규례화되지 않은 특수한 경우, 즉 기근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차왜 등의 파견이 잦아 조선 측에서 접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도 정지 요청이 이루어졌다. 초량왜관으로 이전한 후 이런 특별한 사정으로 처음 연례송사가 정지된 것은 1752년이었으며 이후 1779년, 1815년 송사도 이상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정지되었다. 이때는 1752년을 선례로 삼았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비공식 사유로 연례송사가 정지된 사례

| 시기 | 내용 | 정지 여부 | 출전 |
|--------------|--|-------|---------|
| 丁亥 (164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47년(丁亥) 세건선이 대부분 출래하지 않아 역관 홍희남 등이 ‘茶宴’의 폐해를 없애고자 하여 1648년 송사에 겸대하여 출래하도록 함. 세건1,2선은 이미 출래하여 겸대하지 못함. | ○ | 『典故司日記』 |

78) 『통신사등록』 제8책, 己亥(1719) 7월 27일; 己亥(1719) 9월 13일.

79) 『통신사등록』 제8책, 庚子(1720) 7월 초7일; 『승정원일기』, 경종즉위년(1720) 7월 7일 임신.

| 시기 | 내용 | 정지 여부 | 출전 |
|----------------------|---|-------|---------------------------------|
| 丁巳 (167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왜관 조성으로 인해 연례송사 관련 업무를 주관할 수 없어 정지 요청함. • 1678년 연례송사가 나올 시기에 아직 왜관이 완성되지 않아 왜관 완성 후 나오는 것으로 연기함. | ○ | 『典客司日記』, 『변례집요』 |
| 壬申 (175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적으로 별차왜가 도래하는데 1752년 1753년 송사가 한꺼번에 첩도하면 접대 비용 등의 폐해가 예상되므로 훈도 등이 임의로 5송사(2월 이정암~8월 부특송) 정지 요청함. • 왜관수리 및 통신사 때의 예에 의거하여 정지. | ○ | 『邊例集要』, 『전객사일기』, 『분류기사대강』 |
| 己亥 (177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77년부터 전대마도주의 사망에 더해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아 1778년 연례송사 정지 요청. • 정지 요청 접수되지 않고 1779년 송사정지로 이어짐 | × | 『邊例集要』, 『典客司日記』, 『분류기사대강』 |
| 辛丑 (177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해(1779)조 송사와 庚子(1780)조 송사가 한꺼번에 첩도할 경우 접대 문제로 정지 요청. • 기해(1779)조 송사는 壬申(1752) 예에 따라 정지. → 이 과정에서 圖書 변경 문제 등 발생 | ○ | 『분류기사대강』 |
| 乙亥-丙子 (1815-18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館宇 監董에 폐해가 있고, 조선에 거듭 흉년이 들어 1815년 세건4선부터 1816년 연례송사 정지. • 2월 세건4선~1816년 송사 | ○ | 『변례집요』 |

※ 『변례집요』, 『비변사등록』, 『조선왕조실록』, 『각사등록』, 『전객사일기』, 『승정원일기』, 『분류기사대강』을 참조하여 작성함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752년 송사는 1752년 및 1753년 송사가 한꺼번에 첩도할 경우 접대비용 마련 등의 폐해를 우려하여 훈도 등에 의해 임의로 요청되어 정지하였다. 연례송사는 매년 초 봄부터 차례대로 출래하는 것이 항규인데 그해 11월까지 세건1·2·3선 외에는 오지 않았다.⁸⁰⁾ 여기에 만약 1753년 송사까지 겹치면 접대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대마도주와 전 쇼군의 사망 등으로 인해 대마도주환도고치차왜, 퇴휴관백고부대차왜, 관백승습고경대차왜 등의 내도도 예정되어 있어

80) 『典客司日記』 권2, 영조29년 癸酉(1753) 4월 12일.

접대를 위한 인력과 물력 등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소요될 것이 뻔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훈도 등이 대마도 측에 요청하여 奉行倭가 보낸 서계를 捧上하지 않고 연례송사의 정지를 결정하였다. 2월에 도래하는 이정압부터 8월에 건너오는 부특송에 이르기까지 5송사를 정지하였는데 조선에서는 전에 없던 사례였으므로 논의 끝에 통신사행과 왜관 감동 때의 송사 정지례에 따라 정지하였고⁸¹⁾, 차후로는 이 일을 예로 삼지 않도록 하였다.⁸²⁾

그런데 1779년에도 같은 첩도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직전 해의 송사가 건너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듬해 송사와 중복되어 내도할 경우 접대비용 등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1752년 연례송사 정지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정지가 이루어졌다. 특히 1779년 사례는 다양한 문제와 지리한 논의과정이 있었던 탓에 『分類紀事大綱』에서는 이 시기 연례송사 정지 건을 別錄으로 기록⁸³⁾하고 있을 정도이다.

1779년 연례송사는 전 대마도주의 사망 등에 더해 한동안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대마도 측에서 1777년부터 송사의 정지 요청이 이루어지다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1779년 치의 송사와 1780년 송사가 첩도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정지되었다. 1779년 송사는 전례대로 순조롭게 규례에 따라 정지되는 듯했으나 차후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우선 대마도 측이 먼저 연례송사 정지를 요청한 전례 여부, 1779년 송사와 1780년 연례송사의 첩도시 어느 송사를 정지할 것인가의 문제, 1779년 연례8송사 전체를 정지할 것인가, 대마도주 교체로 인한 圖書 개찬으로 정지 요청 서계 변경이 가능한가 여부 등이 대표적인 문제였다.

우선 조선에서는 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초량으로 왜관이 이전하기 전의 선례들을 상고해보았다. 1648년(戊子) 7월 동래부사 閔應協의 장계등록에 의하면, 1647년(丁亥) 세견선이 대다수 출래하지 않았으므로 역관 洪喜男 등이 茶宴의 폐단을 없애고자 하여 1648년 송사 행차에 겸대하도록 한 적⁸⁴⁾

81) 『변례집요』 권6, 書契路引, 癸酉(1753) 3월, 4월; 『변례집요』 권2, 送使, 계유(1753) 3월; 『典客司日記』 권2, 영조29년 癸酉(1753) 4월 12일.

82) 『典客司日記』 권2, 영조29년 癸酉(1753) 5월 11일; 5월 17일.

83) 대마도중가문서자료집8, 『分類紀事大綱 VII』, 分類紀事大綱別錄, 御送使停止一件 上, 下.

이 있었다. 또한 초량왜관을 조성할 당시 1676년(丙辰) 동래부사 李馥이 한 푼이라도 폐해를 덜고자 이듬해(1677) 출래할 송사의 정지를 건의한 일도 있었다. 1677년 연례9송사 정지 당시 줄어든 접대비용을 계산해보니 쌀로 환산했을 때 535석에 달한데다가 동래부와 부산진에서 별도로 드는 물품과 비용도 줄어들게 되었다. 조선은 당시 이를 큰 성과로 여기고 이후 통신사행이나 왜관 관우 수리 등의 일이 있어 연례송사를 정지하게 될 때 모두 1647년과 1677년의 예에 따르도록⁸⁵⁾ 하였다. 즉 두 해분의 송사가 철폐할 경우 1647년의 예에 따라 앞 시기의 송사를 정지하여 뒷 시기 송사의 접대에 겸대하도록 하고, 통신사행이나 관우 수리 등으로 인해 연례송사가 정지될 경우 1677년 예에 따라 접대 세부 사항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779년 송사는 정지되어 1780년 송사 접대에 겸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송사 철폐시 겸대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 외에 연례8송사 모두를 정지할 것인지도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 대마도에서 송사 정지를 요청할 당시에는 1년치 8송사를 모두 정지할 것을 요청했으며⁸⁶⁾, 동래부사도 이를 수용하여 연례8송사 정지를 조정에 건의하였다.⁸⁷⁾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이제껏 송사가 정지된 사례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정지하지 않고 1년치 송사가 모두 정지된 경우는 없으며 재논의에 들어갔다. 앞의 <표 4>에서처럼 송사정지 요청이 있었을 때 1752년의 경우 세건1·2·3선이 이미 내도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이후 파견되는 이정암송사부터 5송사가 정지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 측에서도 1752년의 전례를 들어 5송사만 정지하는 것으로 서계를 수정할 것을 대마도에 요청하였다.⁸⁸⁾ 즉 통신사행이나 왜관 監董의 경우는 송사 정지의 규약이 있고 연례9송사나 8송사 등 1년치 송사를 모두 정지하지만, 1779년의 경우 특별히 정해진 규약이 없고 전례로 삼을 만한 것은 1752년 사례가 유일하니 이 예에 따라 5송사만 정지하는 것이 아니면 정지 서계를 허락할

84) 『典客司日記』 권2, 영조29년 癸酉(1753) 4월 20일; 『변례집요』 권2, 送使, 戊子(1648) 9월.

85) 『典客司日記』 권2, 영조29년 癸酉(1753) 4월 20일.

86) 『分類紀事大綱 VII』(대마도중가문서자료집8), 分類紀事大綱別錄, 御送使停止一件 上, 安永7 戊戌(1778) 8월 15일(음): 9월 9일(음): 11월 11일.

87) 『정조실록』 정조5년(1781) 2월 4일 丁未.

88) 『典客司日記』 권6, 정조5년 辛丑(1781) 2월 4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779년조 세견1·2·3선을 제외하고 그 이후 파견되는 이정암송사 이하 5송사만 정지하는 것으로 결정⁸⁹⁾하였다.

한편 1780년(庚子)조 제1선 송사가 출래하면서 1779년(己亥)분 5송사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계를 함께 順付하여 왔다. 여기에는 사망한 舊島主人 宗義暢의 圖書가 찍혀 있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건너온 己亥條(1779) 세견1선이 지참했던 서계에는 新島主人 宗義功의 도서가 찍혀 있었다.⁹⁰⁾ 전 후가 바뀐 것이다. 이것은 양측이 연례5송사 정지 결정을 완료하기 전에 대마도 측에서 미리 서계를 작성하여 도서를 찍어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측은 이러한 일을 벌인 대마도 측에 무엄하다는 표현을 하며 격분하였다. 당시 접대 의례를 받고 있던 1780년 세견1선도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는 進獻이 끝나기도 전인데 스스로 접대하는 料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서계를 가지고 돌아갔다.⁹¹⁾ 조선 조정에서도 이 일에 대해 대마도 측의 잘못된 서계를 엄히 물리치지 않은 동래부사 趙英鎭을 從重推考하였다.⁹²⁾ 하지만 5송사 정지의 일을 오랫동안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 조선 측은 이전의 도서 改着 사례를 상고하여 新島主의 도서를 찍은 서계로 바꾸고 접대를 허락하기로 결정하였다. 1780년조 만송원송사편에 新島主의 도서를 개착한 1779년조 연례5송사 정지 서계가 순부되었다.

4. 맺음말

앞서 17세기 말에서 18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조선과 일본 양국이 평화적 교린관계 유지를 위해 충돌을 최소화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연례송사 정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89) 『分類紀事大綱 VII』(대마도종가문서자료집8), 分類紀事大綱別錄, 御送使停止一件 上, 安永10辛丑(1781) 4월 17일(음).

90) 『변례집요』 권6, 書契路引, 辛丑(1781) 5월, 6월 : 『비변사등록』 정조5년(1781) 7월 10일, 『정조실록』 정조5년(1781) 7월 9일.

91) 『변례집요』 권6, 書契路引, 辛丑(1781) 6월.

92) 『비변사등록』 정조5년(1781) 7월 10일.

사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대마도의 의견 대립이 격화된 사례를 몇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왜관 수리와 관련해서는 수리공사 전후 언제부터 연례송사를 정지할 것인가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 합의 과정은 큰 충돌 없이 양국의 상황이나 이해관계를 잘 고려한 상황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통신사행과 관련해서는 서계 접수와 회답서계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고, 매번 통신사행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는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다. 1711년 통신사행 때 양국의 의견 대립이 가장 격화되었는데, 격에 맞지 않는 봉행왜가 서계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에 대해 허용할 수 없었던 조선 측의 강한 대응과 회답서계를 주지 않으면 연례송사 정지를 철회하겠다는 대마도 측의 강한 대응이 충돌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양측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통신사행 → 봉행왜 연례송사 정지 서계 작성 → 동래부·예조 접수 → 연례송사 정지 → 통신사행 종료 → 이듬해 세건1선 편에 보내는 회답서계에 감사의 뜻을 포함’하는 절차가 정례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잦은 별차왜의 도래, 기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연례송사 접대에 부담이 가중된 특별한 상황에서 송사 정지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특히 1753년 송사는 이런 특수한 사정으로 정지될 때 선례로 자리매김했고, 1779년 사례는 송사의 정지 여부, 정지의 범위, 도서 문제 등 다양한 논의거리를 만들어냈지만 결국 양측의 소통으로 큰 충돌 없이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상의 사건들을 대하는 조선과 일본은 때로는 강압적인 대응으로 꼭 필요한 조건은 관철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립상황이 무력적인 충돌 등으로 격화되지 않게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일본사신 파견을 둘러싸고 양국이 대립하면서도 기준을 마련하고, 규약을 준수하려는 노력, 지리한 듯 보이지만 끊임없는 교섭과 소통으로 큰 무력적 충돌 없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조일관계를 ‘교린체제 안정기’로 상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各司謄錄』,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同文彙考』, 『分類紀事大綱』, 『邊例集要』,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歲船定奪謄錄』, 『典客司日記』, 『朝鮮王朝實錄』, 『增正交隣志』, 『春官志』, 『春官通考』, 『朝鮮通交大紀』, 『柳川調興公事記錄』, 『通信使謄錄』

2. 논저

〈국내〉

김문자, 「家康 국서문제의 僞造 및 改作과 동아시아」, 『한일관계사연구』 58, 한일관계사학회, 2017.

김상준·윤유숙 역, 『근세한일관계 사료집 -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柳川調興公事記錄)』, 동북아역사재단, 2015.

三宅英利 저, 손승철 역, 『근세 한일관계 연구』, 이론과실천, 1991.

민덕기,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 경인문화사, 2007.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교린관계의 허와 실』, 경인문화사, 2006.

심민정, 「조선후기 통신사행 관련 차왜 접대」, 『조선통신사연구』 24, 조선통신사학회, 2017.

_____, 「두모포왜관 시기와 초량왜관 시기 연례송사 접대 비교 연구 -『接倭式例』(1659)와 『嶺南接倭式例改謄錄』(1732)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65, 한일관계사학회, 2019.

_____, 「1682년 입술통신사행의 입술약조 강정과 조일 교린관계의 재편」, 『한일관계사연구』 73, 한일관계사학회, 2021.

_____, 「조선후기 연례송사 겸대제 시행과 외교적 의미」, 『인문사회과학연구』 24(3),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_____, 「조선후기 표왜입송제도의 변화와 표왜입송회사차왜의 소멸 과정」 『2023년도 한일관계사학회 학술대회 '바다에서 바라본 조선' 발표자료집』, 한일관계사학회, 2023.

_____, 「조선후기 통신사행으로 인한 연례송사 정지와 제 문제」, 『조선통신사연

- 구』 37, 2024.
- 柳在春, 「임란후 한일국교재개와 국서개작에 관한 연구」, 강원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유채연, 「조선후기 ‘問慰行’ 명칭과 성립과정에 대한 재고」, 『한일관계사연구』 52, 한일관계사학회, 2015.
- _____, 「조선 후기 圖書制의 운영과 조일관계」,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윤유숙, 「조선후기 문위행(問慰行)에 관한 재고(再考)」, 『한일관계사연구』 50, 2015.
- _____, 「조선후기 쓰시마 간사재판(幹事裁判)의 활동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2, 한일관계사학회, 2018.
- _____, 「18세기 후반 쓰시마 간사재판(幹事裁判)의 교섭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6, 한일관계사학회, 2019.
- 이상규, 「仁祖代 전반 問慰行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35, 한일관계사학회, 2010.
- 이형주, 「18세기 쓰시마 번의 재판(裁判) 파견에 관해: 1736년 오일잡물 교섭을 사례로」, 『일본공간』 32,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2.
- _____, 「18세기 조일 외교 속 쓰시마 번 裁判役의 역할」, 『일본역사연구』 61, 일본사학회, 2023.
- 이혜진, 「17세기 후반 조일외교에서의 裁判差倭 성립과 조선의 외교적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8, 한일관계사학회, 1998.
- 하우봉, 「조선후기 한일관계에 대한 재검토-사절 왕래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제26회 동양학술회의 강연초』,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7.
- 한태문, 「朝鮮後期 通信使 使行文學의 特徵과 文學史的 意義」, 『동양한문학연구』 10, 동양한문학회, 1996.

<국외>

- 三宅英利,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1986.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_____, 『書き替えられた國書』, 中央公論社, 1983.

三井大作, 「徳川幕府初代における朝鮮との修好貿易」『史學雜誌』10-2, 1902.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1988.

〈Abstract〉

A Study on Negoti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 through the Case of Discontinuation of the Yeonryesongsa(Japanese envoys in one year) in the Late Joseon Dynasty

Shim, Min Jung

In the process of relocating Waeguan to Chorya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firstly, Yeonryesongsa was stopped in the process of repairing Waeguan, secondly, when Tongsinsa(Royal delegation dispatched from Joseon to Japan) was dispatched, and thirdly, it was stopped for other reasons.

First, It was changed from suspending Yeonryesongsa at the same time as the repair of Waeguan to suspending Yeonryesongsa immediately after the start of repair after consultation.

Second, the issue of receiving letters and submitting responses in relation to the Tongsinsa became a major topic. As a result of continuous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between Joseon and Tsushima on this issue, it became customary to include an expression of gratitude in the reply sent to 'First ship dispatched in the new year' in the year following the dispatch of the mission.

Lastly, there were cases where the dispatch of Yeonryesongsa was halted as the burden of hosting Yeonryesongsa increased due to the frequent arrival of 'Japanese delegations' and natural disasters such as famine. In particular, the Yeonryesongsa suspension of 1753 became a precedent whenever dispatch was stopped for special reasons. In the case of 1779, various discussions were raised, including the scope of suspension of Yeonryesongsa dispatches and the issue of seals, but ultimately an agreement was reached without major conflict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sides.

* Key Words: Yeonryesongsa(Japanese envoys in one year), Suspend the Yeonryesongsa, Gyeomdae(A system to entertain multiple envoys at the same time), Waeguan building repairs, Tongsinsa(通信使)

· 논문투고일: 2024년 06월 16일 · 심사완료일: 2024년 07월 07일 · 게재결정일: 2024년 07월 25일